

BPO의 제도적 고찰과 그 주요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Review and Main Implications under a Bank Payment Obligation

채진익* Jin-Ik Chae

목 차

I. 서론	IV. BPO의 제도적 주요 쟁점과 그 시사점
II.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가치	V. 결론
III. BPO의 제도적 고찰과 그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BPO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심으로 신용장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지급의무의 이행, 확인, 양도 등에 있어서 신용장제도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다. BPO은 기본적으로 기능 면에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용되며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신용장을 포함한 전통적인 제도 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전자적 대안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주제어> BPO, URBPO, eUCP, L/C, SCF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서론

오늘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의 공급체인금융에 있어서 그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금융결제의 디지털화와 그 발전은 정체되어 왔다. 그동안 국제무역은 종이 프로세스 기반인 화환신용장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제무역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BPO(Bank Payment Obligation)의 도입은 무역금융결제시스템의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BPO는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또한 그 당사자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결제 및 금융 솔루션이다.

BPO는 그 기본 기능인 지급약정을 제공하며, 그 지급 여부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자동매칭시스템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매도자의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무역금융결제시스템으로써 BPO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의 의미는 크다. 전통적인 제도가 BPO로 대체되어 공급체인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제도적 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PO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반적이고 개념적인 관점에서 잘 정립된 선행 연구를¹⁾ 기반으로 실제 운용되는 제도적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BPO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그 제도적 발전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BPO의 법리적·학술적 기반과 현장의 대응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더불어 SWIFT 및 ICC의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 본 연구와 연관되는 선행 최근 연구로는 송경숙채훈(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2016)), 우광명(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016)), 임재욱(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2014)), 이봉수(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2016)), 채진익(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2015)), 한낙현·김영곤(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

II.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가치

1. 공급체인금융의 프레임워크로서의 BPO

공급체인금융(financial supply chain)은 무역거래의 전 프로세스와 그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예금 및 운전자금 등을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구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 과정을 말하며, 매도자에게는 주문에서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이클이다(bolero.net, 2011). ICC(국제상업회의소)와 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기관)에서 의미하는 “공급체인금융”은 구매주문에서 그 결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환경의 무역금융결제 프로세스이다(Casterman, 2010; 채진익, 2013a). 따라서 물리적 공급체인 참여자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이벤트 및 활동으로 금융공급체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서비스 클러스터(service cluster)이다(BAFT, EBA, FCI, ICC and ITFA).

금융공급체인관리는 과거 수년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거래에서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무역상대방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혁신되고 있다. 최근 트렌드(trend)는 정보기술 서비스와 함께 공급체인금융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Popa, 2013). 이는 물리공급체인에 따른 물품이동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매칭에 대비하여 고안되었다(Casterman, 2010; 채진익, 2013a).

국제무역에서는 URBPO와 전자매칭시스템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금융결제방법인 BPO로 전체의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그 기반은 SWIFT가 글로벌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의 안전한 금융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다(SWIFT, 2016). 따라서 BPO는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거래당사자의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금융결제 솔루션이다(SWIFT and OPUS, 2016).

그리고 거래은행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BPO의 4코너 모델은 공급체인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 분명한 것은 채무은행의 위험부담으로 BPO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취채권(receivables)의 할인 기회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그 금융기회는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확약에 대한 조기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전·후 금융을 이용하거나, 또는 매수자를 위해 그 채무은행의 지급기간(timeframe)의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BAFT, et al., 2016).

2. 공급체인금융으로서의 BPO의 제도적 가치 구현

공급체인금융의 디지털화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와 모든 이해 당사자를 아우르는 표준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구축하는 디지털 무역거래 프로세싱 없이는 불완전하다.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무역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고 무역비용을 감축시킨다(BCG, 2017).

또한 공급체인금융의 디지털화는 무역거래 프로세싱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 및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거래당사자의 무역거래를 재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고객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플랫폼은 구매주문서의 작성에서부터 그 거래추적 및 대사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BCG, 2017).

그런데 공급체인금융의 디지털화는 모든 관계 당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거래참여자의 네트워크의 규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인금융에 참여하는 많은 은행이 거래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디지털 프론트엔드(front-end)를 개발하고 있다(Grag, 2017).

이와 같은 환경에서 BPO는 전통적인 무역결제금융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더욱더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 전통적인 신용장제도상의 번거로운 서류관리 및 교환절차를 해결함으로써 글로벌적으로 공급체인금융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 제도는 매수자와 그 매도자 간의 직접적 관계를 제공한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는 더욱 긴밀한 협업으로 그들 간의 무역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급라인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다(Susmus and Baslangic, 2015).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의 기본 기능인 지급확약을 제공한다. 따라서 BPO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신용장에서의 지급확약의 이점과 그 결제의 간편성을 향유한다. 더불어 그 당사자들은 거래서류의 디지털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Özalp, 2015; Susmus and Baslangic, 2015).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과 비신용장방식이라는 제도를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융합적이며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무역거래 과정에서의 사기예방 및 투명성 향상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3. BPO의 제도적 목적과 그 주요 특징

BPO는 당초 신용장에서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로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이다(Hennah, 2010). BPO는 법적 구속력 있는 디지털 멀티은행 환경에서도 신용장제도의 수혜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공급체인의 개시부터 즉, 매매계약이 합의된 때부터 위험완화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공급체인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Casterman, 2015).

그리고 BPO는 신용장과 아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의도였다. BPO의 개설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기능 면에서 신용장의 개설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ICC BPO E·G, 2016). ICC BPO Rules Drafting Group의 의장이었던 Gary Collyer는 “무역금융의 수단으로서 BPO는 그 특성상 화환신용장과 유사하다.”라고 언급했다(ICC 751E, 2013; Raketti, 2016).

BPO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PO는 취소불능의 조건부 지급약정이다. 따라서 일단 개설되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으며, 그 성격상 우발채무이다. 따라서 BPO가 개설되기 전에 일치성 기준을 위한 사전 특정 조건의 약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단일의 무역거래 및 일정 금액으로 개설된다(ICC, 2012).

따라서 BPO의 지급이행 여부는 채무은행과 수취은행 간에 교환되는 기초 무역거래에 관한 데이터(data)의 완전한 매치, 즉 약정된 거래조건의 완전한 충족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TMA(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는 관련 데이터 셋 간의 완전한 매치를 증명하는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Data Set Match Report)라는 보고서를 생성한다. 그 데이터 셋은 기초 거래물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된 상업송장, 운송, 보험 및 또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BPO는 TMA를 통하여 대조된 데이터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은행이 그 미스매치를 수리하지 않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ICC, 2012).

또한 BPO는 약정된 조건으로 이행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것이며, 데이터의 성공적인 매칭을 통하여 증명되었을 때 그 지급이 이행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종류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불이행이 아닌 기초 거래물품의 매매계약 이행으로 지급의무가 이행된다(ICC, 2012).

그리고 BPO는 다양한 지급조건으로 약정될 수 있다. 즉, 일람불(즉시 지급) 또는 연지급으로 개설된다. 연지급 BPO인 경우에는 무역금융거래에 있어서 참여은행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공급체인금융의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즉, BPO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거래은행 기반의 선적 전후의 공급체인금융 기회를 창출한다(BAFT, et al., 2016). “일람불”로 개설되어 지급되면 그 BPO는 종료되며,

채무은행 또는 수취은행의 장부 및 잔액으로부터 배제 또는 정리된다. 그 BPO가 연지급 약정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TMA에서 데이터 셋 매치 시에 부외 우발채무에서 장부 내의 확정적 지급확약으로 전환된다(ICC, 2012).

마지막으로 BPO와 그 관련 프로세스 및 규칙(URBPO)은 사실상 은행 간에 적용되며, 따라서 은행간의 “협력적 공간”(collaborative space)에 속한다. 한편 수취은행과 수출자 간과 같은 한 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에 약정된 추가적 또는 별도의 모든 약정은 은행간의 “경쟁적 공간”(competitive space)에 속한다. 그러므로 URBPO와 같은 BPO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는다(ICC, 2012).

〈그림 1〉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충족시키는 BPO의 수혜



Transaction risk mitigation	Payment assurance through preferred bank
Early payment to support financially critical suppliers	Earlier funds collection and FX risk mitigation
Negotiate better trade terms	Optimize working capital thanks to earlier settlement
Streamline operations and reduce costs	Improve transaction visibility and traceability
Improve order-to-cash process	Improve A/R reconciliation
Flexible order of goods	Increase competitiveness

자료 : ICC

Ⅲ. BPO의 제도적 고찰과 그 비교

1. 기본 계약·구조적 비교

1) 제도적 약정체계

BPO는 신용장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BPO는 몇 가지의 중요한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실질적인 출발점은 각각의 계약체계로 보여진다.

BPO는 신용장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P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사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UCP에 따르면 취소불능 신용장은 그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되는 약정된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구성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은행의 취소불능 신용장의 확약은 약정된 일하하는 서류가 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C,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BPO는 약정된 거래 데이터가 TMA에 설정된 베이스라인(baseline)과 성공적으로 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무은행의 지급확약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BPO는 매수자의 거래은행에서 개설된다. 그런데 BPO를 개설할 당시에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대신 개설된 경우에는 그 은행의 역할은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서의 확인은행의 역할과 유사하다. 금융적 지급약정의 이행은 약정된 조건, 즉 TMA에서의 베이스라인과 데이터의 매치가 충족되어야 한다(ICC, 2012).

한편 BPO는 공급체인 프로세싱을 위해 일련의 SWIFT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ICC에서 제정된 별개의 규칙체계에 따라 규율된다. BPO는 자동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SWIFT 표준 메시지와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기본규칙(default rules)을 이용하여 신용장과 매우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UCP 신용장을 전자화하려는 이전의 시도와는 달리,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아마도 신용장을 능가하는 BPO의 가장 특징적인 출발점이다. 신용장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eUCP와는 달리, BPO는 전자기반의 독립된 프레임워크이다(Raketti, 2016).

BPO는 ICC와 SWIFT에서 승인된 규범체계, 즉 URBPO와 ISO 20022로 운용되며, URBPO는 은행간에만 적용된다(Wells, 2014).²⁾ 그리고 BPO는 TSU(Trade Service Utility)와 그 규약(rule book)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UCP 600과 유사한 맥락에서 법체계적으로 인정되는 URBPO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BPO의 기술적 시스템은 TMA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업자 또는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IFC, 2016).

여러 측면에서 URBPO의 입안자가 선택한 용어를 살펴 보면 전통적인 신용장과는 별도의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자신용장’과는 달리 그 제도를 ‘BPO’로 칭하기로 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BPO의 법적 체계는 신용장과는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단순한 의미론적인 것 이상이다(Raketti, 2016). ICC는 신용장이 UCP의 지원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BPO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ICC BPO E·G, 2012).

2) 설정된 베이스라인 내 BPO 영역에 URBPO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은행이 BPO는 이들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개별약정에 합의한 경우, URBPO는 BPO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URBPO는 설정된 베이스라인 또는 개별약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각 참여은행을 구속한다(URBPO 제2조 a항; 채진익, 2013).

2) 기본적 거래구조

BPO와 신용장과의 기본적인 구조적 차이이다. BPO 거래 그 자체는 은행간의 거래 (bank-to-bank transaction)이며, 그 계약은 은행만이 관여한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BPO 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본 약정상의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거래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은행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신중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Raketti, 2016).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거래기업은 그 당사자가 아니며, 수취은행의 위험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취은행에 의한 매도자의 모든 위험완화는 BPO와는 별개이다. 그리고 신용장거래는 기본적으로 3 당사자가 관여한다. 즉 개설의뢰자, 수익자, 그리고 개설은행이다. 반면 BPO 거래에서 기초 거래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ICC BPO E·G, 2016). 따라서 채무은행은 수취은행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BPO의 수익자는 항상 매도자가 아닌 수취은행이 되는 이유이다. 또한 BPO의 양도가 불가능한 이유이다(ICC BPO E·G, 2012). 그리고 BPO가 신용장처럼 확인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BPO는 매수자,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 매도자, 그리고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을 참여시키는 4코너 모델을 이용한다. BPO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들은 파트너(partner) 또는 환거래은행으로서 서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채진익, 2016). 이들 은행은 일반적으로 그들 각각의 거래고객의 상황에 정통하며, 그 BPO의 지급약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각 고객에게 적절한 신용공여(credit facilities)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BAFT, et al., 2016).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동화된 매칭시스템이며, 또한 이를 이용하기 위해 동일한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는 은행간의 약정이다. 즉 모든 은행은 동일한 TMA를 이용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채진익, 2013b). 신용장은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물리적인 서류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BPO에서는 그 서류로부터 발췌된 데이터는 전자매칭을 위해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 발송될 것이다(ICC BPO E·G, 2012).

2. 은행의 지급의무

BPO에서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은행의 매도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BPO의 직접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의 별도의 계약으로 다루어진다(ICC BPO E·G, 2012).

URBPO 제10조 c항에서는 채무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지급약정 영역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은행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 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을 제출하여, 그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그 미스 매치(mismatch)가 수리된 경우(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의에서 규정되었듯이 BPO는 조건부의 지급약정이며, 그 기초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의무가 이행된다. 따라서 채무은행은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거나 또는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에 데이터 셋과 설정된 베이스라인 간에 미스매치가 기술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ICC, 2012).

따라서 채무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BPO에서 채무은행은 오로지 그의 지급의무를 수취은행에게만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채무은행과 수취은행 간의 베이스라인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연지급 BPO)에서 채무은행이 파산된 경우, 수취은행은 채무은행의 위험을 인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URBPO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ICC BPO E·G, 2012).

또한 채무은행이 적기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URBPO에 따르면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의 지급 의무에만 관계한다. 그러나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의 별도의 서비스 약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은행은 BPO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위험 또는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특정한 약정을 했을 수도 있다(ICC BPO E·G, 2012).

그리고 매도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은행 또는 수취은행의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당연히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취은행의 매도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 수취은행과 그 매도자 간의 기초 약정(별도의 약정)으로 결정될 수 있다(ICC BPO E·G, 2012).

따라서 BPO 거래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에 체결되는 별도의 약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별도의 약정은 BPO 개설 시에 두 당사자의 제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지급확약의 독립성

BPO는 그 기초거래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지급확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BPO는 그 기초거래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약을 추가하여 운용됨으로써 이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다.³⁾

URBPO 제6조에서는 “BPO는 그 기초 무역거래를 근거로 하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이며 독립적이다. 참여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은 참여은행 또는 매도자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매수자의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자와 그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그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채무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채진익, 2013b).

본 조항은 BPO가 기초 매매계약으로부터 BPO의 분리 및 독립적 성격을 보여주며, UCP 600 제4조에 표현된 일반적인 문언 및 원칙을 따르고 있다(ICC 751E; 채진익, 2013b). 즉, 본 조항은 UCP 600 제4조와 유사한 맥락으로 기술하고 있다(채진익, 2013b).

그리고 URBPO 제7조에서는 “참여은행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 또는 데이터 또는 서류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물리적인 서류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들 서류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은행은 자신이 입력 또는 수취하는 그 데이터와 관련될 수 있는 그들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규칙은 이에 대한 일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ICC 751E).

그러나 공급체인 물류시스템과 공급체인금융의 통합으로 BPO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경계(the drawing lines)는 그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어려움은 신용장 제도 상에서 이미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MAP Marine Ltd. v.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사건에서, 은행이 신용장을 근거로 한 환어음의 인수를 거절해야 했던 것은 당연히 존재했어야 하는 화물선이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웹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일부 정보를 근거로 거절한 것이며, 따라서 사기적인 제시(a fraudulent presentation)를 근거로 거절하게 되었다.⁴⁾ 본 사건은 그 기초 거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기초를 이루는 사실 상황에 관련된 객관적인 인증 데이터가 환어음의 발행을 허용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방법으로 신용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BPO “TMA”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한에서는 중요하다(Raketti, 2016).

결과적으로 BPO 프레임워크 내에서 독립성의 문제는 적어도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3) N.B., Of course, just as is the case in disputes where LCs are used, should the buyer ultimately prevail in trial or at arbitration in its claims against a seller, the seller may then become liable - however having moneys in hand prior to any such dispute is always advantageous(Raketti, 2016).

4) 70 A.D.3d 404 (N.Y. App. Div. 2010), *aff'd per curiam*, 78 A.D.3d 614 (N.Y. App. Div. 2010).

위해 운용되는 베이스라인의 설정을 위한 데이터 기준점(data points)이 실제 정보(real world information)에 의해 입력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낮아지게 된다(Raketti, 2016).

4. BPO의 확약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확실한 대금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통지은행을 포함한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의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요구할 수 있다(채진익, 2017).

전통적인 신용장은 은행과 수익자 간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인 반면, BPO는 채무은행과 수취은행 간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다(Chaturvedi, 2013). BPO 거래에서의 매도자는 BPO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PO의 확인은 BPO의 범위 밖이다(ICC BPO E·G, 2016). 따라서 BPO는 신용장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confirmed)될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은행은 매도자와의 별도의 약정으로 BPO 확인이 가능하다(ICC, 2012). 즉 BPO 거래에서 매도자가 채무은행에 대한 위험 및/또는 국가위험이 해소되기를 원한다면, 수취은행은 그 매도자의 요청으로 확인을 추가 약정할 수 있다(ICC, 2015). 매도자는 해외 국가에 있는 채무은행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시되는 모든 데이터를 매치시키는 조건으로 수취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는다(ICC Guidelines, Appendix; 채진익, 2017).

이 경우, 수취은행의 지급확약은 채무은행으로부터 접수한 BPO를 근거로 약정되며, “무수권 확약”(silent confirmation)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회계처리는 채무은행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ICC BPO E·G, 2016).

그 이후 BPO가 수취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채무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ICC, 2012; 채진익, 2017). 따라서 BPO 수취은행은 채무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수취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의 합의로 약정된다. 이와 같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미수권으로 확인”하는 은행이 된다(ICC BPO E·G, 2012).

5. 담보로서의 선하증권

국제무역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우선 전자적으로 발행되며, 또한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운용과 법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선하증권을 말한다(채진익, 2014). 전통적인 무역

거래에서 선하증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서류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BPO에서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는 운송서류의 데이터 셋을 규정하고 있는 필드에 그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운송서류의 정보는 그 베이스라인과 기타 데이터 셋에서의 정보와 대조하여 매치된다. 즉, 운송 데이터 셋에서의 운송정보는 베이스라인에서 이에 상응하는 운송정보와 매치된다.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한, 물리적 서류는 은행채널이 아닌 거래당사자 간에 이송될 것이다(ICC BPO E·G, 2012).

신용장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설의뢰자의 의무 불이행(지급불능 상태)에 대비하여 선하증권을 제시서류로 신용장에 명시하여 담보로 이용된다. 즉, 개설의뢰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개설은행은 제시받은 선하증권으로 당해 물품을 매도함으로써 그의 지급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BPO는 본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위해 선하증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본 거래에 규정되지 않는다(ICC, 2012). 즉 BPO는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본 선하증권은 은행을 통하여 발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하증권 원본이 수입자에게 직송되거나 또는 '신용장거래에서 권리포기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Harada, 2013).

그러나 BPO 거래에서 채무은행은 그의 거래고객인 매수자와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당해 운송서류 또는 관련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질권설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도자와의 약정으로 BPO를 '확인하는' 수취은행으로서 그 상황은 신용장의 확인과 매우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수취은행은 서류 또는 물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없다(ICC, 2012).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매도자와의 별도약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은행보증과 구분/양도 가능성

BPO는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BPO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기초 무역거래를 주된 기반으로 하는 지급약정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ICC BPO E·G, 2016). 즉 BPO와 은행보증과의 주요 차이점은 보증서는 계약 불이행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그 지급의무가 이행되나, BPO는 성공적인 매칭 데이터를 통하여 증명되는 거래물품의 선적을 이행함으로써 지급의무가 이행된다. 이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BPO는 무역 사이클 자체의 일부이다. 일방의 당사자가 물품을 인도하면, 그 상대

방은 BPO를 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증과 다른 이유이다 (ICC, 2012).

BPO의 양도 가능성, 즉 양도 가능한 BPO는 없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BPO는 은행 간의 약정이며, 그 대금지급은 수취은행에 이행된다. 그리고 BPO의 수익자는 항상 매도자가 아닌 매도자의 거래은행이다. 따라서 양도 가능성은 선택 조건이 아니다. 다만, 매도자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인도할 책임있는 제3의 당사자인 대금 양수자를 수취자로 하여 그 지급을 이행하도록 수취은행에게 별도로 지시할 수는 있다(ICC BPO E·G, 2012).

그리고 BPO 그 자체로는 사기를 막을 수 없다. 은행은 모든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그들의 거래고객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반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제출하는 은행은 자신이 TMA에 제출한 데이터를 인증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고객으로 접수된 데이터는 제출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만하면 된다(ICC BPO E·G, 2012).

IV. BPO의 제도적 주요 쟁점과 시사점

1. BPO의 은행간 거래구조 상의 문제

BPO는 매도자와 매수자와 명시적으로는 관계있지만, URBPO는 관련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타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부수적 약정(collateral arrangements)에 합의하는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BPO 그 자체의 본질을 벗어나는 약정변경만 하지 않는다면, URBPO는 비록 제3의 당사자인 매도자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은행들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실제로 채무은행이 파산되거나 또는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초 거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매도자의 지급보장에 대한 문제이다.⁵⁾

물론 은행의 파산 또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채무은행이 유효한 “데이터 매치”에도 BPO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는 BPO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을 무력화하

5) “In theory, the insolvency of a bank need not affect the beneficiary of a commercial letter of credit because the documents tendered to the bank have commercial value and can be turned into cash if the bank is unable to accept them.”(Mugasha, 2003; Raketti, 2016).

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Raketti, 2016).

BPO가 은행간의 전적인 지급약정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BPO는 은행간 사적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될 수 있다. URBPO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BPO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Hennah, 2013; Raketti, 2016).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BPO는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도입된 도구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특별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BPO는 틀림없이 신용장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지만, 또한 더 창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신용장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기획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Raketti, 2016). 한편 은행은 축소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 시장에서 계속 존재하여 시장욕구와 트렌드에 대응하며, 더욱 경쟁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PO를 고려할 것이다(IFC, 2016).

2. BPO와 전자신용장과의 관계

BPO는 그 이전 신용장의 전자화 시도와는 많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거래의 전자화에 대한 “올인”(all-in) 접근이다. 예컨대 eUCP의 취지는 신용장을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계속 종이의 사용을 허용하여, 완전한 전자화가 아닌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framework)이다(Byrne, 2012). 더욱이 신용장은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많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는 점 때문에 전자화가 특히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Byrne, 2012; Raketti, 2016).

BPO 거래에서 물리적인 서류는 많은 경우에 물리적 공급체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류의 물리적인 교환과 병행하여 그 데이터는 BPO의 조건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종이서류로부터 전자적으로 발췌하여 TMA를 통하여 제출된다. 이는 URBPO가 eUCP와 구별되는 측면이다(Byrne, 2012; Raketti, 2016). 즉, 거래당사자간에 무역거래에 따르는 종이서류가 계속 존재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그 종이서류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 추출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변환·제시하여 운용한다는 의미이다.

신용장과 BPO는 대안적인 무역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지급결제조건은 UCP의 보완규칙인 eUCP가 적용된다. 반면 BPO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결제조건은 URBPO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자동화된 데이

터 매칭시스템(TMA)으로 강화된다(ICC BPO E·G, 2012).

eUCP의 일부 조항은 URBPO와 통합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두 규칙은 그 범위가 다르다. eUCP는 신용장의 거래에 따른 전자기록(예컨대 스캔된 이미지)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한 UCP의 보완규칙이다. eUCP는 그 자체로 URBPO와 함께 계속 존속될 것이다. 한편 BPO의 또 다른 유용성은 전통적인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완전히 자동화된 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한 ISO 20022 메시징 표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ICC BPO E·G, 2016).

따라서 eUCP는 종이서류의 전자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UCP 600에 대한 보완규칙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URBPO는 통상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종이서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전자제시와 그 매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Raketti, 2016).

3. BPO의 제도적 전망과 시사점

제도적으로 보면 정보기술의 발전은 최근에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무역금융의 디지털화와 그 발전은 정체되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은 국경을 넘어 위험환화의 수단으로 제공되었으며, 안전하고 적기의 지급보장은 물론 금융수단으로 제공되어 왔다. 서류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의 노력은 1990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장선택 및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었다(SWIFT & OPUS, 2016).

그러나 근래들어 신용장거래에서 오픈 어카운트 무역으로 지속적인 이동과 더불어 무역과 그 공급체인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IT(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기술적 획기적인 진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SWIFT는 글로벌 '공급체인금융'의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은행은 또한 일반적인 형태의 진일보된 공급체인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물리적 공급체인에 따른 물품의 이동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매칭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Casterman, 2010; 채진익, 2013a).

BPO는 디지털 거래 및 금융으로 인한 편익으로는 우선 물리적 거래와 전자무역금융과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그 효율성의 개선은 은행은 물론이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심을 끄는데 충분한 제도로 보인다(Casterman, 2015).

특히, BPO는 다양한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데이터베이스화된 매카니즘이다. BPO는 순수한 오픈 어카운트 거래보다 더욱 안전한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BPO는 데이터 매칭과 자동화된 결정(automated decisioning)으로 종이 흐름을 제거하고 인간의 개입(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화환신용장보다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SWIFT & OPUS, 2016).

그리고 BPO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이고, 그 이용자와 비즈니스를 위해 앞으로 계속 진화될 것이다. 더욱이 BPO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그 거래기반인 제도적 기반과 그 시스템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신용장은 디지털화 시대에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며,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를 위한 중립적인 채널이 BPO로 생각된다. 다만 그 정착에 큰 혼란 없이 그리고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BPO는 신용장제도와는 독립적인 새로운 제도로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운용될 것이다. 한편 BPO 운용의 중심에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트렌드에 대응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제무역에서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도입된 BPO는 정보기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이다. BPO는 지급보장을 기본 매커니즘으로 하여 그 프로세스를 데이터화와 및 자동화함으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BPO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기능 면에 신용장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편익도 유사한 신용장과 유사한 반면, BPO의 프로세스에 따르는 비용은 신용장에 비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신용장의 전자적 대안으로 거래의 효율성 향상, 운전자본의 효율적 운용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BPO는 신용장제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제도이다. BPO는 별개의 제도로 운용된다. BPO는 SWIFT의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ICC에서 제정된 별개의 규칙체계에 따라 규율된다. 또한 BPO는 그 운용구조가 신용장과는 다르다.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은행만이 관여한다. BPO는 매수자, 채무은행, 매도자 및 수취은행이 참여하는 4코너 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BPO는 자동화된 매칭시스템의 운용 등이다.

그런데 BPO는 그 운용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구조적으로 매도자는 BPO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은행의 지급의무는 매도자가 아닌 수취은행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BPO의 확인에 있어서도 URBPO 규칙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될 수 없다. 이는 매도자는 그의 거래은행과의 약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BPO의 양도 가능성, 즉 양도 가능한 BPO는 없다. 그리고 BPO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PO의 eUCP와의 관계에 있어서 eUCP는 종이서류의 전자제시를 위해 UCP 600의 보완규칙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URBPO는 통상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종이서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전자제시와 매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BPO는 더 신속하고 편리한 대안으로 자동화된 신용장의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공급체인금융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BPO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그 이용자 지향적 제도로 계속 진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송경숙채훈(2016), “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pp.99~117.
- 우광명(2016), “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6호, pp.283-299.
- 임재욱(2014),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pp.177-196.
- 이봉수(2016), “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pp.3-21.
- 채진익(2014), 「전자무역론」, 청목출판사, 2014, p.262.
- 채진익(2013a),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171, 172.
- 채진익(2013b),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123.
- 채진익(2015), “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5권, pp.117-139.
- 채진익(2016),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p.180, 151, 152.
- 채진익(2017),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

- 학회지, 제42권 제2호, p.360.
- 한낙현·김영곤(2013),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p.141-175.
- Byrne, James(2012), “The Four Stages in the Electrification of Letters of Credit”, *3 George Mason J. Int. Commer. Law* 253, pp.274-279.
- BAFT, EBA, FCI, ICC and ITFA(2016), “Standard Definitions for Techniques of Supply Chain Finance”, *Global SCF Finance Forum*, p.17, 64, 67.
- BCG(2017), “Digital Commercial Supply Chains and Trade”, *Discussion paper*, p.3. 12.
- Casterman, A.(2010), “Collaborative supply chain finance”, *Dialogue Q4*, SWIFT, p,18.
- Casterman, A.(2015), “A New Era in Commerce and Finance”; From E-Invoicing to E-Supply Chain Management, The Papers, *Innopay*, p.24.
- Chaturvedi, Vishal(2013), “Bank Payment Obligation: The New Global Standard for International Trade from SWIFT & ICC”, *The Financial Services Blog*, available at blogs.oracle.com/financialservices/entry/bank_payment_obligation_the_new(Jan. 31, 2017).
- Dolan, John F.(2013), “Negotiable Obligations for Discount: Notes, Acceptances, DPUs and BPOs”, *29 Bank. Finance Law Rev.* 103.
- Garg, H.(2017), “Innovation in Trade Finance”, *Global Public Investor*, p.82.
- Hennah, D.(2010),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16 No 3, July - September, p.10.
- Harada, T.(2013), “A Perspective of Trade Finance by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Workshop on Trade Finance Lombok, Indonesia, *Bank of Tokyo-Mitsubishi UFJ*, p.11.
- ICC(2012),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ICC(2013),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lication No. 750E, p.8.
- ICC(2012),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Document No. 470/1204*, p.4, 6, 11, 12,
- ICC BPO Education Group(2012),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anks”, *Document No. 110912*, p.3, 4, 5, 6.
- ICC(2013),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lication No. 751E, p.87, 88.
- ICC(2015),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Document No.

- 470-1251, p.12.
- ICC(2016), "Bank Payment Obligation", *Business Briefing, ICC Banking Commission Meeting Mexico City*, p.19, 21.
- IFC(2016), "Bank Payment Obligation: Financial Instruments to Manage Risk in the Open Account Trade", World Banking Group, p.12.
- Mugasha, A.(2003). "Issuer Insolvency", *Law Lett. Credit Bank Guarant*, 94.
- Ozalp, A.(2015). "According to the New ISP; L/C and Practices", Istanbul: Turkmen Publishing.
- Popa, V.(2013), "The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a New Solution for Supply Chain Resilience", *Amfiteatru Economic*, Vol. XV. No. 33, p.141.
- Raketti, Matthew V.(2016), "The Bank Payment Obligation: A Vehicle for the Electrification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016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edited by James E. BYRNE, Christopher S. BYRNES, Justin B. BERGER(2016).
- Susmus, T. and S. Ozgur Baslangic(2015), "The New Payment Term BPO and Its Effects on Turkish International Business", *Procedia, ScienceDirect*, p.324.
- SWIFT & OPUS Advisory Service Int'l Inc.(2016), "Digital Trade and Trade Financing; Embracing and Shaping the Transformation", p.5, 6.
- SWIFT(2016), "Bank Payment Obligation; A New Payment Method", p.4.
- Wells, R.(2014), "Bank Payment Obligations(BPOs) – Basics for Corporates", *BarrettWells*, T3P Limited, p.1.
- <https://www.swift.com/news-events/news/swift-standards-forums-land>(2017).
- http://www.bolero.net/solutions/finacial_supply_chain.html(2011).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Review and Main Implications under a Bank Payment Obligation

Jin-Ik Chae

Abstract

A Bank Payment Obligation is now in operation as payment instruments in the business of Supply Chain Finance since 2013. The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of the Obligor Bank subject to the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all required Data Sets with the established Baseline in the TMA.

Although the BPO should be regarded as similar to a Letter of Credit, it is a new payment solution based on a technology and data-driven mechanisms. The BPO is different from the letter of credit in their structure such as a bank to bank obligation, an automated matching engine, a transfer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 etc.

The BPO can also be used more effectively on a stand-alone solution as an electronic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instruments, it will provide a new range of solutions to meet the ever-changing needs of the trade customers.

However, the BPO could be raised several issues including an assurance of payment between recipient banks and sellers because the BPO is a bank-to-bank obligation. The URBPO do not applies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their business clients.

So,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institutional understanding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main issues in the BPO as comparison with the Letter of Credit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research was also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focusing on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 materials of ICC and SWIFT.

<Key Words> BPO, URBPO, eUCP, L/C, SCF